

1. 개정이유

포상금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지급 요건이 행정처분 시에도 지급되도록 확대됨에 따라 지급 절차 및 지급신청서를 정비(안 제62조, 별지 제63호 서식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생략
- 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농림축산식품부령 제 호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농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검사가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)를 한”을 “처분이 확정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”을 “처분이 확정되었는지를 확인한”으로 한다. 별지 제6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포상금지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 :)
	전화번호	

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			
범법행위의 유형			
범법행위 연월일		관련농지의 면적	m²
범법행위 장 소			
사건 처리 결과			
포 상 금 액			

「농지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경유기관(시·도지사) 확인]

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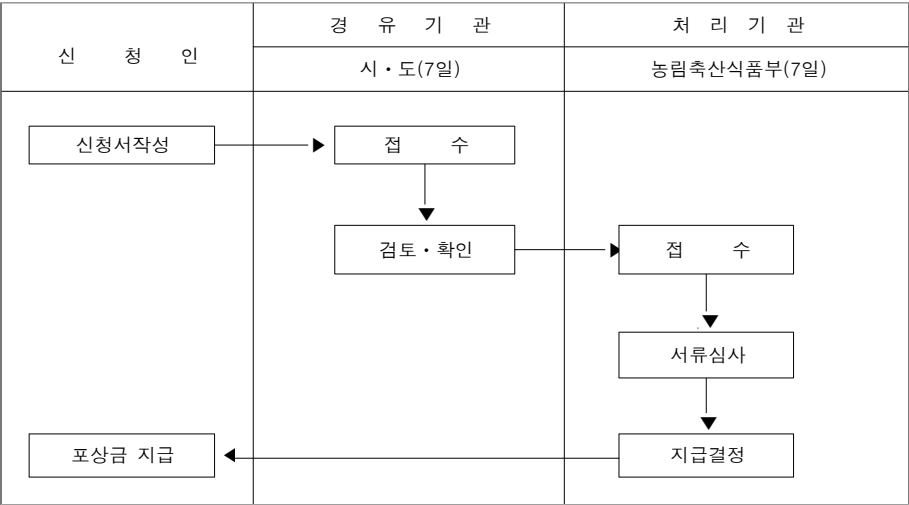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·고발확인서 2.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(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임금의뢰서(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 수 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 쪽)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안 내

○ 포상금은

- ① 「농지법」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(불법 농지소유자, 불법 농지전용자 등)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,
- ② 동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 1. 검사가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)된 경우
 2. 다음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 - － 법 제11조제1항(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6항(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처분명령,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,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,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

○ 따라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처분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,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2조(포상금의 지급) ①영 제72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 사건에 대하여 <u>검사가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)</u> 를 한 후에 별지 제63호서식의 포상금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, 해당 농지 또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이 경우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받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자치구구청장은 해당 서류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송부해야 한다.	제62조(포상금의 지급) ①----- ----- ----- 처분이 <u>이 확정된</u> -----
1. ~ 3. (생략)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건에 관한 <u>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처리 내용을 조회한 후</u> 포상금지급을 결정하고, 그 결	1. ~ 3. (헌행과 같음) ②----- ----- ----- <u>처분이 확정되었는</u> <u>지를 확인한</u> ----- -----

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농지관리기금운용계획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. ③ · ④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. ③ · ④ (현행과 같음)
--	--

포상금지급신청서

※ 뒤쪽의 신청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14일
------	-----	------	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주소	(전화번호 :)
	전화번호	

고발 또는 신고한 범법행위의 내용			
범법행위의 유형			
범법행위 연월일		관련농지의 면적	m²
범법행위 장 소			
사건 처리 결과			
포 상 금 액			

「농지법」 제5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2조에 따라 위와 같이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귀하

[경유기관(시·도지사) 확인]

위 기재사항이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

년 월 일

시·도지사 직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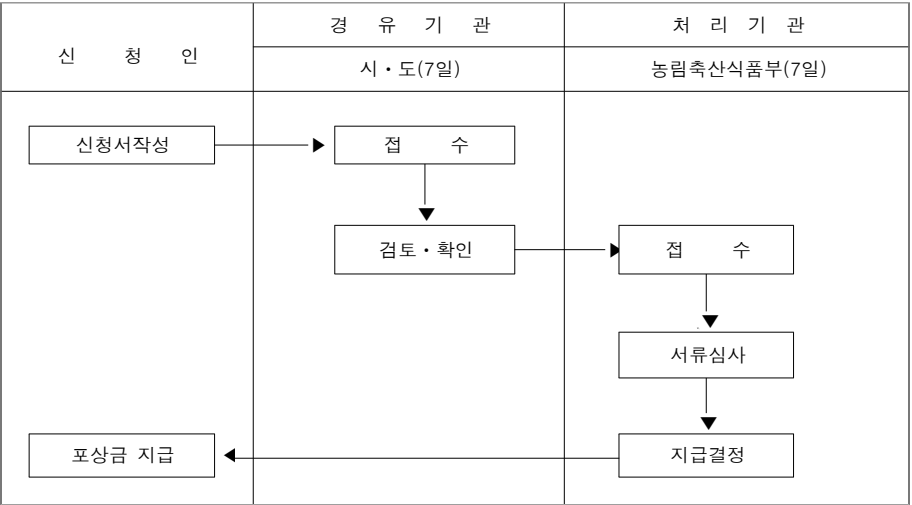
첨부서류	1.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의 신고·고발확인서 2. 포상금 배분에 관한 합의서(배분액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 3. 임금의뢰서(포상금의 계좌입금을 원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 수 료 없 음
------	--	--------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 80g/㎡]

(뒤 쪽)

처리절차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안 내

- 포상금은
- ① 「농지법」 제5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(불법 농지소유자, 불법 농지전용자 등)를 행정기관이 적발하기 전에 주무관청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건으로서,
- ② 동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지급하게 됩니다.
1. 검사가 공소제기·기소중지 또는 기소유예를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지(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)된 경우
2. 다음의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
- － 법 제11조제1항(제12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 또는 제6항(제12조제6항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처분명령,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 허가 취소나 관계 공사의 중지 등 조치 명령, 법 제42조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,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
- 따라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는 경우 처분을 조회한 후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며, 조회에 따르는 기간의 소요로 포상금의 지급시기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농림축산식품부 농지과	
연 락 처	(044) 201 - 1744, 1740